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6.0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3.6.07.

다. 상정일자 :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3.6.2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 의 택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2013년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단가 인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수수료 현실화와 구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기본원칙(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 관계자의 책무(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마포구 :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주민, 사업자 :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마포구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 사업자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부과방법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변경
 - 단독주택 : 40원/L (사업장 : 50원/L)
 - 공동주택 : 90원/Kg

3)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감량의무이행신고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제8조,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실시
 - 위탁 재활용 처리업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지불(제9조)
 - 다량배출사업장 전용수거용기 사용(제15조)
 - 사업장과 위탁 재활용 처리업자간 계약서 작성시 처리수수료 명시(제16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방안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제16조, 제17조)

4)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및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0 본 조례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정하였음.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등에서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 하였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종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부여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감량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였음.

0 안 제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는 용어를 정리 하여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0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서 “구청장” 이 중복되었으므로 뒷부분의 “구청장”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9.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2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는 2011.9.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로 각각 수정을 요함.

0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는 안 제13조제2항과 동일한 수정사유로 이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라 한다)” 는 해당 조문 다음에 약칭을 사용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로 하며, 안 제16조제1호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며,” 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로 , 안 제16조제2호 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는 조문을 정리하여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로, 안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신고” 는 안 제8조제4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로 각각 수정을 요함.

0 안 제17조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자” 와 “재활용신고자” 는 안 제13조제2항과 동일한 수정사유로 이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로 하고, 안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는 조문을 정리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로 하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시행규칙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별표 1] 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9조 관련]” 는 제목을 다시 정리하여 이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로 하고,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가격” 란 하단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사업장별로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를 신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표 2] 의 제목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0조 관련]” 은 제목을 다시 정리하여 이를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으로 하고, [별표 2] “배출요령” 란 중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는 조문정리를 하여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로 수정을 요함.

0 [별표 3]의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목을 다시 정리하여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3]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란 제1호나목 및 다목과 제2호다목 중 “당해”는 각각 “해당”으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 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은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 서식 중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0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중 “집단급식소, 음식점·호텔·콘도 등, 대규모점포”란 중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는 각각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로, “소형복합찬기 이용”은 “소형·복합찬기 이용”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의 <작성요령> 제2호 중 “소멸화등으로”는 “소멸화 등으로”로, 제3호 중 “퇴비·사료등으로”는 “퇴비·사료 등으로”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하단의 “마포구청장 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